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등 공고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공무원 임용시험의 필기시험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9일

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일시

가. 시험일자 : 2021. 10. 16.(토)

나. 시험시간 ※ 응시자 입실 : 09:20까지

- 행정7급 : 10:00 ~ 11:40(100분)
- 기록연구사 : 10:00 ~ 12:00(120분)
- 운전9급 : 10:00 ~ 10:40(40분)
- 그 외 직류 : 10:00 ~ 11:00(60분)

2 시험장소

가. 시험장소 : 춘천권역, 3개 시험장

- 남춘천중학교 (강원도 춘천시 충혼길 51)
- 남춘천여자중학교 (강원도 춘천시 충혼길 55)
- 춘천중학교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442-10)

※ 시험 응시표는 장소공고일(9.29.)부터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시험장소	직 급	응시직류	임용예정 기 관	응시번호
3개 시험장		21개 직류		
남춘천 중학교	7급	일반행정7급	강원도	81190001 ~ 81190569
남춘천 여자중학교	연구	학예일반연구사	도 일괄	82210001 ~ 82210086
		기록관리연구사	도 일괄	83210001 ~ 83210027
		농업환경연구사	도 일괄	84210001 ~ 84210034
		임업연구사	강원도	87190001 ~ 87190025
		공중보건연구사	강원도	89190001 ~ 89190033
		환경연구사(일반)	도 일괄	90210001 ~ 90210037
		환경연구사(조류동정)	강원도	91190001 ~ 91190004
	지도	농업지도사	도 일괄	92210001 ~ 92210226
		원예지도사	도 일괄	94210001 ~ 94210018
		축산지도사	도 일괄	93210001 ~ 93210021
춘천중학교	9급	선박항해9급	도 일괄	49210001 ~ 49210011
		선박기관9급	강원도	50190001 ~ 50190012
		의료기술9급(임상병리)	도 일괄	51210001 ~ 51210052
		의료기술9급(작업치료)	도 일괄	52210001 ~ 52210041
		의료기술9급(물리치료)	도 일괄	53210001 ~ 53210053
		의료기술9급(치과위생)	도 일괄	54210001 ~ 54210042
		의료기술9급(방사선)	도 일괄	55210001 ~ 55210040
		통신기술9급(어업지도선)	강원도	56190001 ~ 56190003
		운전9급(건설기계조종)	도 일괄	63210001 ~ 63210016
	9급 (기술계 고졸)	일반기계9급(기술계 고졸)	도 일괄	57210001 ~ 57210009
		일반전기9급(기술계 고졸)	도 일괄	58210001 ~ 58210009
		일반농업9급(기술계 고졸)	도 일괄	59210001 ~ 59210029
		축산9급(기술계 고졸)	도 일괄	60210001 ~ 60210003
		보건9급(기술계 고졸)	도 일괄	61210001 ~ 61210008
		일반토목9급(기술계 고졸)	도 일괄	62210001 ~ 62210005

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안내사항

- 안전한 시험 진행과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모든 시험장은 시험전일 및 시험종료 후 철저한 소독관리를 할 예정이며, 응시자는 아래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내 '자진신고 시스템'이 운영되므로,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출입국 이력이 있는 응시자는 사전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진신고 시스템 운영 기간 : 2021. 10. 1.(금) ~ 10. 15.(금)
- 시험 당일 응시자 이외에는 외부인(가족 포함)의 시험장 출입을 전면 통제합니다.
- 시험장 방역 및 응시자 위생관리를 위해 **08:00 이후부터 입장이 가능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반드시 개인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 미착용 시 시험장 입실이 불가합니다.**
 - 시험장 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시험시간 중에도 착용하되, 응시자 신분 확인 시간에는 마스크를 벗어 신분확인에 협조 바랍니다.
- 모든 응시자는 시험장 입실 전 체온 측정 및 손 소독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기침·발열 등 의심징후가 있는 응시자는 예비시험실에서 응시하거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징후가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은폐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격리대상자 응시 여부 확인을 위해 시험장 출입구에서 응시표 또는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험장 입실 시 응시자 간 안전거리를 최소 1.5m 이상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 개인이 사용한 휴지 등은 시험장에 버리지 말고 다시 가져가셔야 합니다.
- 시험 중 코로나19 주요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시험감독관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 시험실 환기를 위해 시험 시간 중 창문 등을 개방할 수 있으니, 따뜻한 옷을 지참하시어 컨디션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퇴실 시, 인원 분산을 위해 저층부터 순차적으로 퇴실할 예정이오니, 시험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퇴실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징후가 발생한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응시 안내

-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는 일반시험장에서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시험 응시를 희망할 시, 반드시 사전에 별도 시험 응시를 신청하여야 하며,** 관할 보건소 등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시험문제 수송, 시험장 준비 등의 관계로 사전 신청하지 않은 확진자·자가격리자는 응시 불가
 - 기간 내 신청하지 않거나, 강원 외 지역에서 확진된 경우, 여건에 따라 시험응시가 어려울 수 있음
 - 사전신청 이후라도, 보건당국의 격리 해제가 확인된 경우 일반시험장에서 응시 예정
- **사전신청기간 : 2021. 9. 29.(수) ~ 10. 15.(금) 18시까지**

【 코로나19 확진 시 별도시험 신청 방법 】

① 확진 판정을 받는 즉시 시험시행본부로 연락

- 응시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응시자 본인이 직접 보건소 확진통보 담당자에게 필기시험 응시자임을 알리고 시험응시 전담 병원으로 병상 배정 요청 후,
- 즉시 강원도 시험시행본부(☎033)249-2218, 2227)로 확진 사실을 알림

② 지정된 시험응시 전담 병원으로 입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 시험응시 전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배정받지 못한 경우, 관할 보건소 또는 지자체 병상 배정 담당자에게 시험응시 전담시설로 배정 요청

③ 해당 주치의로부터 응시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발급받은 후, 별도시험 신청서(붙임3)와 함께 제출

- 이메일(htiger80@korea.kr)로 제출 후, 강원도 시험시행본부(☎033)249-2218, 2227)로 연락 * 신청 결과 및 자세한 응시방법은 별도 유선 안내 예정

④ 시험 당일 시험응시 전담 병원 등 해당 시설에서 시험 실시

【 코로나19 자가격리 시 별도시험 신청 방법 】

① 자가격리 통보를 받는 즉시 시험시행본부로 연락

- 응시자가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응시자 본인이 직접 보건소 자가격리 통보 담당자에게 필기시험 응시자임을 알리고,
- 즉시 강원도 시험시행본부(☎033)249-2218, 2227)로 자가격리 사실을 알림

② 관할 보건소로부터 외출 허가를 받은 후,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한 자가격리 통지서 및 별도시험 신청서(붙임3) 제출

- 이메일(htiger80@korea.kr)로 제출 후, 강원도 시험시행본부(☎033)249-2218, 2227)로 연락 * 신청 결과 및 자세한 응시방법은 별도 유선 안내 예정

③ 시험 당일 별도로 지정된 장소에서 시험 실시

다. 일반사항

- 모든 응시자는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시험당일 오전 8시 이전에는 출입이 제한됩니다.)
- ※ **시험 당일 손소독 및 발열검사 등을 거쳐야 하므로** 이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미리 시험장에 도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수정테이프**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 **시험당일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수정테이프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음**
 - 응시표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 마이페이지 → 응시표 출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여권·장애인등록증 중 하나**
 - ※ 공무원증, 학생증, 자격수첩,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주민등록번호가 미포함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 원서접수 이후, 개명한 응시자는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원의 개명결정문)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 답안을 잘못 표기한 경우, **개인의 수정테이프**(수정액,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를 사용하여 답안 수정은 가능하지만, **시험시간 중 타인의 수정테이프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함**
-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시험 전일까지 시험실에는 들어갈 수 없음)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 사정으로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주차공간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번호에 따라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타 시험장 응시자는 당해시험 무효 처리)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수험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타 응시자에게 방해되는 행위(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 볼펜 똑딱 소리, 반복적인 헛기침)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휴대전화, 태블릿PC, 녹화기능이 탑재된 기기(안경 등), 스마트 시계, 무선호출기, MP3, 이어폰 등 일체의 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의 전자기기를 휴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휴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되어 당해시험이 무효처리되고 퇴실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시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계산·통신 등의 기능이 있는 시계(스마트 시계 등), 소리로 인해 타 응시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시계 등은 사용 불가
-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배부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배탈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출제되는 과목의 시험문제는 공개하므로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있으나, 강원도 자체출제 과목은 문제 및 정답을 비공개 하며, 시험종료 후 회수하므로 절대 가져갈 수 없습니다.

직 급	직 렬	직 류	비공개 과목(강원도 자체출제)
7급	행 정	일반행정	(비공개 과목 없음 / 전 과목 인사혁신처 출제)
연구사	학예연구	학예일반	문화사, 한국문화사, 민속학
	기록연구	기록관리	기록관리학개론(전자기록물관리 포함),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 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문헌정보학
	농업연구	농업환경	재배학, 토양학, 농업환경화학
	녹지연구	임 업	생물학개론, 조림학, 수목학
	보건연구	공중보건	보건학, 역학, 미생물학
	환경연구	환 경	환경공학, 환경화학, 생태학
지도사	농촌지도	농 업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원 예	재배학, 원예학, 농촌지도론
		축 산	축산학개론, 가축사양학, 농촌지도론
9급	해양수산	선박항해	선박일반, 항해
		선박기관	선박일반, 선박기관
	의료기술	의료기술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방송통신	통신기술	전자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
운 전	운 전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9급	기술계	공 업	일반기계 (비공개 과목 없음 / 전 과목 인사혁신처 출제)
		공 업	일반전기 (비공개 과목 없음 / 전 과목 인사혁신처 출제)
	농 업	일반농업	농업생산환경
		축 산	축산, 가축사양, 초지
	고졸	보 건	환경보건, 공중보건
시 설	일반토목	(비공개 과목 없음 / 전 과목 인사혁신처 출제)	

※ 강원도 자체출제 과목의 문제(책)를 절취, 훼손, 필사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라. 답안지 기재 및 표기

- 점수산출은 판독기가 판독한 결과에 따릅니다.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보기>의 올바른 표기 예시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특점 불인정 등)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보기> 올바른 표기 : ● 잘못된 표기 : ∇ ⊗ ◐ ◉ ◌ ◍ ◎ ② ③

- 특히,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 번짐 등으로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된 경우, 농도가 얇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답안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 등에는 불이익(특점 불인정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 표기하여야 하며,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 사용하여야 하며, 별도로 수정테이프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시험시간 중 타인의 수정테이프를 빌리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수정테이프가 없는 경우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표기하였던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단,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 ※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적색볼펜, 연필, 샤프펜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표기를 하여 중복답안으로 판독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지를 받으면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 먼저 상단에 시험일자, 인적사항 및 필적감정용 기재란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 답안지를 교제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단 기재(표기)사항을 빠짐없이 본인이 직접 작성(표기)하여야 합니다.(교체 전 답안지는 폐기처리 됨)
 - 시험시작 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문제책 표지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다음, 답안지 책형란에 해당 책형을 기재 후 '●' 로 표기(1개) 하여야 합니다.
 - ※ 인적사항 및 책형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당해시험 무효 처리 등)을 받을 수 있음
 - 필적감정용 기재란 예시문의 내용을 본인 필적으로 기재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책 편철이 표지의 과목순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문제책 누락, 인쇄상태 및 파손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은 반드시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과목이 있는 응시자는 본인의 응시표에 인쇄된 선택과목 순서에 따라 답안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답안을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으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 ■ ■ ■ ■)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마. 부정행위 등 금지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특히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해시험을 무효처리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책형·인적사항을 포함한 모든 기재사항은 시험시간 내 해당 시험실에서 작성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시험 중에 소지하고 있는 응시표의 앞면 또는 뒷면에 시험문제와 관련된 사항이 인쇄되었거나 메모되어 있는 경우 당해시험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필기시험 성적 사전공개 및 합격자 발표 안내

가. 필기시험 성적 사전공개 안내

- 공개내용 : 과목별 원점수
 - ※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은 점수이며, 성적조회 시 가산점은 0으로 표시됩니다.
- 공개기간 : 2021. 10. 27.(수) 09:00 ~ 10. 28.(목) 18:00
 -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 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 접속 → 로그인 → 성적조회)에서 응시자별 본인의 성적 조회가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 공개기간 내, 전화 신청(☎ 033-249-2227, 2548)
- 재검증 결과 공개 : 2021. 11. 1.(월)
- 위 공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해당 답안지는 정상 판독된 것으로 간주하여 개인별 성적(과목별 원점수)을 그대로 확정합니다.

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강원도청 홈페이지(<https://www.provin.gangwon.kr>)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 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 게시합니다.
 - ※ 강원도청 홈페이지(<https://www.provin.gangwon.kr> 접속 → 도정마당 → 시험정보 → 시험안내)
- 필기시험 성적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 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서 응시자 본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 **불합격**자의 성적조회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개**
 - 필기시험 **합격**자의 성적조회 → **최종합격자 발표 시 공개**
 -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 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 접속 → 로그인 → 합격/성적조회)
- 필기시험 합격 여부 및 성적은 개별 통지하지 않으며, 전화 열람 신청은 불가합니다.

시험일시·장소 등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 7일 전에 강원도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시험 당일 외부인의 시험장 출입을 전면통제합니다.

시험 진행에 대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수험생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시험장 조성을 위해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 수험생 협조 사항

- 모든 수험생은 시험 당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후 입실 및 퇴실 시까지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 단, 신분확인 시간에는 마스크를 벗어 신분확인에 협조 바랍니다.
- 모든 수험생은 시험장 입실 전 체온 측정에 협조합니다.
 - 체온측정 등으로 입실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을 예상해 미리 시험장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 증상확인 후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시험장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 위생 후 시험장에 입장하고 화장실에 다녀와서도 반드시 손위생을 실시해 주십시오.
- 수험생은 시험장 내에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 손수건, 옷소매 등으로 가리는 등 에티켓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 중 코로나19 주요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시험감독관에게 즉시 알려 주십시오.
- 타인과 대화하지 말고 반드시 건강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주십시오.

2. 개인위생 관리 철저히 준수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시 호흡기감염 의심환자 행동수칙

일반수칙

- 실내 시설, 밀집된 실외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기
- 꼭 필요한 경우(병원 방문 등) 외 외출을 자제하되 부득이한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 타인과 접촉 최소화 및 사람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가지 않기

가정 내 주의사항

-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가족 또는 동거인과 거리 두기(2m)를 지키기
* 특히 고위험군(영유아·고령자·만성질환자 등)과 접촉 피하기
- 개인물품(개인용 수건·식기류·휴대전화 등)은 따로 사용하기
-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매일 청소·소독하기

의료기관 방문 시 주의사항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발생 시 선별진료소, 호흡기전담클리닉,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검사받기
- 의료기관에 방문하려면 먼저 전화로 증상을 알리고 사전 예약하기
- 선별진료소, 호흡기전담클리닉 또는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가급적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복용자 주의사항

-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면서 발열 등의 임상증상 확인하기
- 항바이러스제 복용 후 열이 떨어지면, 24시간 동안 추가로 더 이상 증상이 없으면 등원, 등교, 출근하기
- 약제 복용 24시간 이후에도 발열, 호흡기 증상이 지속되면 검사의뢰서를 지참하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기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6단계]

1 손바닥
2 손등
3 손가락 사이
4 두 손 모아
5 엄지 손가락
6 손톱 밑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로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올바른 기침예절]

1 휴지나 손수건은 필수
2 옷 소매로 가리기
3 기침 후 비누로 손씻기

발행일 2019.11.5.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9-5판 기준

□ 사례 정의

○ 확진환자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 : 코로나19 유전자(PCR) 검출, 바이러스 분리

○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코로나19 임상증상

(주요증상) 발열(37.5 ℃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폐렴 등

(기타증상)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

○ 조사대상 유증상자

-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시 (또는 별도 공지 기간),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

□ 감염병의심자

○ 감염병의심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
- ☞ 접촉자의 구분은 시·군·구 보건소 및 시·도 즉각대응팀이 역학 조사를 통해 확정함
- ☞ 접촉자는 역학조사에서 확정된 자 외에 신고, 접촉자 모니터링 등을 통해 추가될 수 있음
-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